

제16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09. 9. 21.(월)

조례안 및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채옥

【 목 차 】

1.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4
3.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 32

<의안번호 제2009 - 34호>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9. 7.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9. 8.

2. 제안이유

-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이 '06.1.1부터 전면개정(법률 제7297호, '04.12.31)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 자연경관 보전 및 청정환경에 대한 군민적 관심 증대에 부응하고 자연경관 심의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자연환경보전법」의 전면개정 시행('06.1.1)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함(안 제1조, 제10조).
- 나. “자연경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추가하고, 종전의 용어(“자연경관 보전”, “자연경관 보전지역”,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정비하여 ‘호’의 순서를 이동함(안 제2조).
- 다. 현행 조례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의 입목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 관리)제3항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9조, 제10조).
- 라. 현행 조례 제12조(자연경관 보전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의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11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제1항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각각의 조문 순서를 바꾸어 해당 내용에 맞게 문맥 등을 정비함(안 제11조, 제12조).
- 마.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하고, 위원의 인원을 현행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리는 등 자연경관보전에 관한 군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관위주의 인적구성을 탈피, 민간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한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조항을 신설함(안 제13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거나,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함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28조, 제40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 「도로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09. 7. 27.~2009. 8. 21.) 결과 : 아래 참조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의견	반영 여부
합	제13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께	④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	· 부위원장은 민간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민간 참여를 적극 보장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반영
하	⑤ 위원은 자연경관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위촉하며, 산림환경과 장과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다	· 규칙 개정 시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반영
는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거	되 연임할 수 있다		
창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06. 1. 1부터 「자연환경보전법」(법률 제7297호)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연경관 보전 및 청정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에 부응하고 자연경관 심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자연경관”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하고, 종전 “자연경관보전”, “자연경관 보전지역”,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에 대한 용어의 뜻을 새롭게 정비함.
- 안 제13조에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하고, 위원의 인원을 현행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리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민간참여를 적극보장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조항을 신설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거나,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관 계 법 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일체의 현상을 말한다.
5. "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무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6. "소(소)생태계"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7.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종내)·종간(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8. "생태축"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서식공간을 말한다.
9. "생태통로"라 함은 도로·댐·수중보(수중보)·하구언(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10. "자연경관"이라 함은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11. "대체자연"이라 함은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14. "생태·자연도"라 함은 산·하천·내륙습지·호소(호소)·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15. "자연자산"이라 함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16. "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17. "생태마을"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12조(생태·경관보전지역)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경관전이(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정사유 및 목적
2. 지정면적 및 범위
3.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징
4. 토지이용현황
5. 핵심구역·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의 구분개요 및 해당 구역별 관리방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나.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다. 생태·경관보전지역

2. 제1호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등과 그 밖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인·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거목(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세부 지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을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또는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으로 조정하는 경우
3.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제35조(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및 전통·생태마을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 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3. 그 밖에 암석·암벽·폭포·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9.7.1] [환경부령 제336호, 2009.6.30, 타법개정]

제10조(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①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직접적인 훼손 여부
 2. 주변 자연경관과 개발사업등의 위치·형태·색채·높이 및 규모 등의 조화 여부
 3. 주요 조망점에서의 사업전후 경관변화 가능성의 정도
- ② 제1항 각 호의 검토기준에 따른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9.2.6] [법률 제9442호, 2009.2.6, 일부개정]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 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5.13] [대통령령 제21488호, 2009.5.13, 일부개정]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 「도로법」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市道)
6. 군도(郡道)
7. 구도(區道)

<의안번호 제2009 - 35호>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9. 7.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9. 8.

2. 제안이유

- 서북부경남 과실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를 위하여 「FTA기금사업」으로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이 연합하여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 그 설치근거와 기능, 관리위탁, 운영방법 등 거점산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설치근거 등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시설의 명칭은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로 하고, 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으로 함(안 제3조).
- 다. 유통센터는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선별·포장·저장·판매 등의 유통과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지원, 농산물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등의 기능을 함(안 제4조).
- 라. 유통센터는 군이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운영할 경우 관리에 드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마.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 바. 유통센터의 관리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의 범위와 그 선정절차, 위탁 협약 및 취소, 위탁이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 사. 유통센터 운영주체의 기본적인 운영방법, 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른 의무 및 책임, 휴·폐업 허가, 위탁운영에 따른 각종 보고 및 검사와 사무처리에 대한 지도·감독 등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32조까지).

아. 그 밖에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H유통에 대하여는 운영주체의 범위, 위탁신청, 운영주체의 선정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운영주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둠(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2009년 본예산에 355백만원 확보

(포장재비 202백만원, 선별비 153백만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재무과(재산관리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09. 7. 31. ~ 2009. 8. 24.)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서북부경남 과실 주산지역에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를 위하여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그 설치근거와 기능, 관리위탁, 운영방법 등 거점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이 조례안은 총 5장 43개조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시설의 명칭은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로 하고, 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 유통센터는 군이 직접운영하거나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운영 할 경우 관리에 드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위탁운영 주체의 범위와 그 선정절차, 위탁 협약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1조부터 제32조까지는 유통센터 운영주체의 기본적인 운영방법, 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른 의무 및 책임, 휴·폐업 허가, 위탁운영에 따른 각종 보고 및 검사와 사무처리에 대한 지도·감독 등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부칙 제2조에서 그 밖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H유통에 대하여는 운영주체의 범위, 위탁신청, 운영주체의 선정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운영주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음.
- 본 조례안은 「FTA기금사업」으로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이 연합하여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함에 따른 거점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관 계 법 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08.6.22] [법률 제8749호, 2007.12.21, 전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 9.(생략)

제28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은 5명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⑤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69조·제70조 및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및 부대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산지유통센터·집하장·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및 육가공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유통·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6.26, 타법개정]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4.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5조(농산물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제17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에 기재된 사항
2.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3.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를 두는 영농조합법인에만 해당한다)의 성명과 주소
4. 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5. 총출자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② 제1항의 설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27조(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제29조(농업회사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읍면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제30조(부대사업)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4. 농업기계, 그 밖에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6.27] [법률 제9178호, 2008.12.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3>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 2008.2.29>

1.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쓰레기발생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 중 비규격출하물량에 대하여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하자·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은 농수산물의 규격출하촉진, 쓰레기감량화 및 하역기계화 등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2008.2.29>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① 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기타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6.27]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0호, 2009.6.9, 일부개정]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사용료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6>

1.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이 당해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당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할 것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의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사무실 및 도체등급판정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6, 2009.6.9>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제42조의2(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6]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신청지역의 농수산물유통시설현황, 종합유통센터의 건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운영자의 선정계획,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물량처리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및 운영수지분석
 3. 부지·시설 및 물류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기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유통센터건설의 타당성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지구입·시설물설치·장비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③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①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이 조에서 "운영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3.3>

1. 농림수협등(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2.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②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위탁자"라 한다)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수집능력·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및 농수산물유통에 대한 경험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위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의 총액은 당해 종합유통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자는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자회사가 수행하는 "기타 유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수협등이 설치한 농수산물직판장 등 소비자유통사업
2. 농수산물의 상품화촉진을 위한 규격화 및 포장개선사업
3. 기타 농수산물의 운송·저장사업 등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09. 4.27] [법률 제9174호, 2008.12.26, 일부개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3.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기간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21조(수탁재산의 이용료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9조(협약체결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09.4.1] [법률 제9577호, 2009.4.1, 일부개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3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양여)·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의안번호 제2009 - 36호>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가뭄대책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9. 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9. 8.

2. 제안이유(배경)

- 가뭄 및 시설노후화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에 대체 수원개발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를 시행하여 원활한 식수공급.
- 공기업전출금 일부를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비로 예산 이용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유

- 공사중인 현장 주민 요구사항 증가(추가물량 증가)
 -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마을 배수시설, 확·포장 등 요구
- 1회 국비 추경분(4,000백만원)에 대한 군비부담금(4,000백만원) 미확보로 사업 추진애로 및 국비분(4,000백만원) 반납 우려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추가 요구: 37개소

나. 예산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 현황				계약(원인) 금액	잔액	비 고
계	본예산	이월	추경			
13,297	1,057	3,214	9,026	13,200	97	추경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제외

다. 소규모 수도시설사업비 확보계획

-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일부 예산을 이용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우선 사용 주민불편 해소
 -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예산 이용
- 이용금액 : 1,000백만원
- 예산이용에 따른 향후 조치사항
 - 전출금(일반회계) 이용에 따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변경 : 추경 시
 - ※ 이용사업 : 강북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5,200백만원)
 - 미확보 예산 및 공기업 전출금 변경금액 : 추경 또는 '10년도 당초예산 확보

라. 세출예산 이용 조서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

나. 합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다. 예산의 이용(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예산집행 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이를 집행부의 재량으로 위임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임.
 - 이용방법 : 사업부서가 정책사업간 통계목까지 이용을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
 - 이용요구 :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이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이용확정 : 사업 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이용처리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지방의회의 승인사항) 지체 없이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이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5. 검토의견

- 본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가뭄 및 시설노후화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에 대체 수원 개발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를 시행하여 원활한 식수를 공급하고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일부를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예산 이용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것임.
- 이용 승인요구 사유에 대하여는 제1회 국비 추경분(4,000백만원)에 대한 군비부담금(4,000백만원) 미확보로 사업추진 애로 및 국비분(4,000백만원) 반납 우려가 있으며,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마을 배수시설, 확·포장 등 공사중인 현장 주민 요구사항에 따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추가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이를 집행부의 재량으로 위임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 이용사업인 강북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5,200백만원)의 추진현황과 미확보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함.

6.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세입"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이체)할 수 있다.